

해외임가공 감면대상 제외비용, 물품 취급 수수료 등 거래제한비용의 FTA활용 가능여부가 궁금합니다!!

김덕연 연구원 국제원산지정보원

해외임가공품의 FTA활용팁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관세의 감면이란, 수입물품 또는 수입자가 특정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관세를 감하여 주거나, 면제해 주는 제도를 말한다. 납부하여야 하는 관세를 줄여주거나, 이에 면제해주는 제도들을 통틀어 관세의 감면제도라 한다.

해외임가공물품에 대한 감세란 관세법 제101조의 규정에 따라 국내 업체가 외국의 임가공 업체에 원재료 또는 부분품을 수출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원제품)으로 제조하거나 가공한 후 수입하는 때에 수출 원재료에 해당하는 관세를 감면하여 주는 제도를 말한다.

이때, 해외임가공품이 세액 감면을 받기 위한 조건은 다음의 두 가지로 첫째, 원재료 또는 부분품을 수출하여 제85류, 제90류 또는 제9006호에 해당되는 물품으로 제조·가공한 후 다시 수입하는 경우와 둘째, 제조·가공 및 수리를 위하여 수출된 물품으로서 제조·가공 및 수리 후 수입된 물품과 HS 10단위가 일치하는 경우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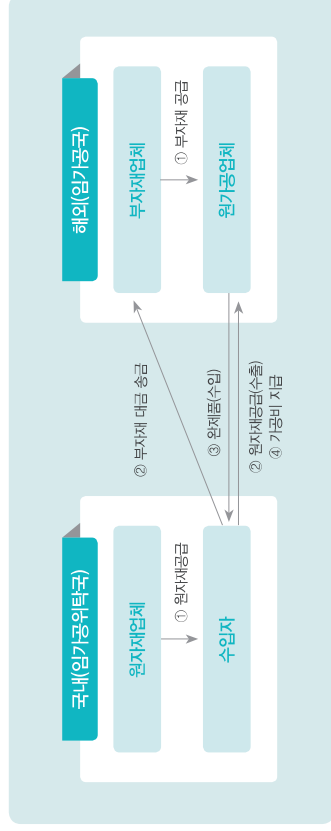
단, 해외임가공물품 등의 감면 범위는 수출된 원재료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다시말해 해외임가공을 위해 발생하는 임가공료와 양복 운임 및 보험료는 해당 원재료와는 별개로 과세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즉, 전체 재수입 물품에 대한 100% 감면의 의미는 아니며, 관세법 101조의 조건에 충족되는 경우, 해당 원재료에 대하여만 감면을 해 주는 제도인 것이다. 그렇다면, 임가공료, 물품 취급 수수료, 양복운임 등 거래제한비용까지 세액 절감효과를 누릴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FTA를 활용해보도록 하자. 만약 해외임가공업체(수탁가공업체)가 우리나라

와 FTA를 체결한 국가에 소재하며, 임가공물품이 협정에서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FTA 특혜관세를 적용받음으로써 해외임가공품에 대한 감면보다 더 큰 관세혜택을 받을 수 있다. 즉, 임가공물품이 역내산으로 인정받을 경우 수출된 원재료에 대한 관세는 물론 임가공료와 양복 운임·보험료에 대한 세액 역시 면제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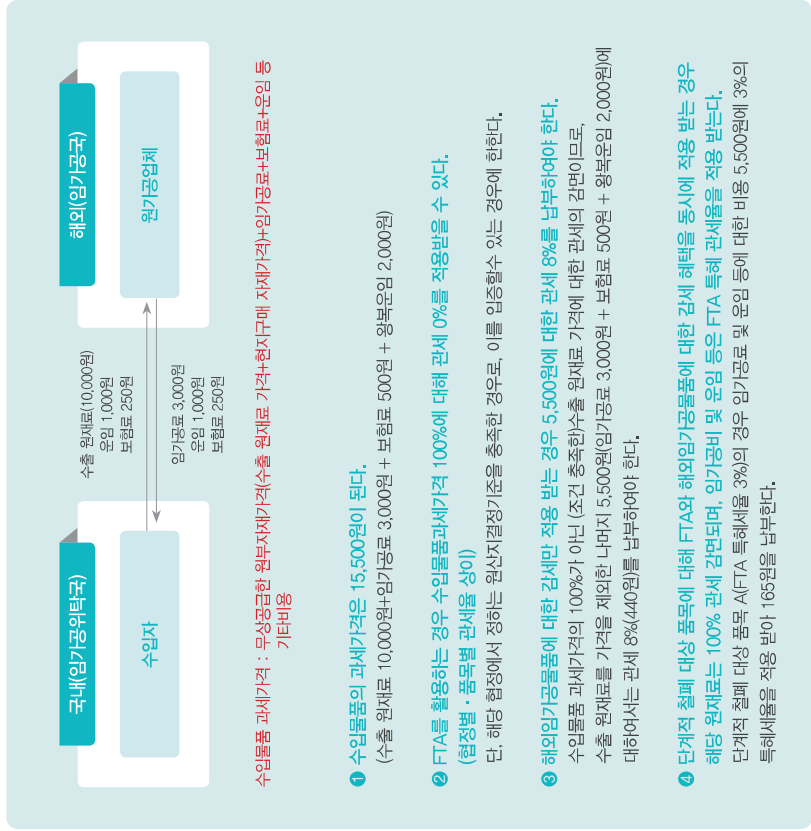
또한 해외임가공물품 등에 대해 감면을 받고자 하는 경우, 임가공계약서 및 수출원재료라 활용된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소요량, 진량관리 등 복잡한 행정절차가 수반되지만 FTA를 활용할 개 되면 역내산을 입증할 비교적 간단한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함으로써 특히 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으므로 상대적으로 혜택을 받기가 수월하다. 단, 반드시 원산지를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은 기억해야 한다.

두 제도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해외임가공 물품 등 감면	FTA 특혜세율
적용 대상 물품	제85류, 제90류 또는 제9006호에 해당되는 물품으로 제조하거나 가공한 후 수입하는 경우 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물품으로 HS10단위가 일치하는 물품	제한 없음
특혜 범위	수출된 원재료의 가치에 대해서만 100% 면세	철폐 스케줄에 따라 0%~100%
제출 서류	임가공계약서, 수출원재료와 수입물품 HS 10단위가 일치함을 입증하는 자료 등	원산지증명서 (EU의 경우 원산지인증수출자)
적용시점	수입신고 수리 전	수입신고 수리 전 (수입신고일로부터 1년간 소급 가능)
적용범위(국가)	어느 국가나 적용 가능	FTA 체결국에 한정



이와 관련하여 해외임가공물품의 원산지결정기
 단, 단기간 실행 계획 등의 이유로 100% 혜택세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FTA 혜택세율을 적용하는
 적용이 되는 양을 경우 원산지결정하는 기간 내에
 있어 기업 운영에서 유리하며, 협정에 비정하는
 해외와 해외임가공 품목의 원산지 결정이
 원산지결정기율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원산지
 결정이 어려운 경우 관세 면제 혜택을 받음
 결정이 어려운 경우 관세 면제 혜택을 받음
 결정이 어려운 경우 관세 면제 혜택을 받음



이때, 제품 A가 한-ASEAN FTA를 활용 100%
 혜택세율을 받을 수 있는 제품이라면 당연히
 FTA를 활용한 혜택세율을 적용받겠지만, 제품
 A가 단계적 철폐 대상 품목으로 수입신고 당시
 FTA 혜택 세율이 3%인 경우에는 수입물품가격
 15,5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465원의 관세
 를 납부하게 된다. 반면 해외임가공물품을 선택
 할 경우 250원의 혜택을 추가로 받을 수 있어, 임
 가공로 등에 대한 관세 440원만 납부하면 된다.
 이때 관세 440원에 대한 절감이 다시 한 번 가능
 한데, 역시 FTA의 활용이다. 수입신고 당시에 임
 가공 수입 인보이스에 원재료와 임가공비 등을

구분하여 신고할 경우, 각 관별로 감면과 FTA
 혜택을 각각 동시에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적용하는 경우, 원재료는 100% 관세 감면이 되고,
 임가공비 등은 FTA 혜택관세 3% 적용, 납부해야
 하는 최종 관세는 165원이 될 수 있다.

이렇게 FTA를 전략적으로 혜택을 활용한다면,
 기업에게는 새로운 보너스가 발생할 수도 있다.
 다만 해외임가공로 및 원재료, 운임, 보험료는 계속
 해서 변동하므로 임가공계약 전에 정확히 실익을
 계산하여 유리한 혜택을 받는 것에 익숙해져야
 하겠다.

관세법 제101조(해외임가공물품 등의 감세)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관세를 감할 수 있다.
 - 원재료 또는 부분품을 수출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으로 제조하거나 가공한 물품
 - 기공 또는 수리할 목적으로 수출한 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물품
- 제1항의 물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관세를 감하지 아니한다.
 - 해당 물품 또는 원자재에 대하여 관세를 감면받은 경우. 다만, 제1항제2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 이 법 또는 「수출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환급을 받은 경우
 - 보세기공 또는 장차기간경과물품을 재수출조건으로 매각함에 따라 관세가 부과되지 아니한 경우